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22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같은 법 제29조제1항·제3항·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예정된 처분사유	예정된 처분내용		
1	박O순	61.06.15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	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('21.4.15) 및 1,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. 1차 출석통지: '21. 4. 20. 2차 출석통지: '21. 4. 27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4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 6. 22. ~ 2021. 7. 06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지인(Tel. 031-412-669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